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2월24일(월)

장 소 정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1)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4)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1)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5)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8)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8)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12)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1)

상정된 안건

- | | |
|---|---|
|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1) | 2 |
|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4) | 2 |
|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1) | 2 |
|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5) | 2 |
|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8) | 2 |
|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8) | 2 |
|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12) | 2 |
|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1) | 2 |

(14시14분 개의)

○소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에 위원 사보임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위원님께서 우리 소위원회를 사임하셨고 전현희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입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홍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일 경우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 제명 중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관계자분들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회의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1)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4)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1)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5)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8)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8)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12)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831)

(14시16분)

○**소위원장 강민국**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황승기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승기** 의사일정 제1항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의무 부과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조합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 근거 마련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보건·의료조합이 정관, 사업결산 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조합 또는 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공시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여 통합공시하도록 하며 통합공시를 위한 필요 자료를 보건·의료조합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에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전문위원 의견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법안소위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손을 들고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강준현 위원** 저 잠깐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소위원장 강민국** 강준현 위원님.

○**강준현 위원** 보건·의료조합 운영 현황,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이 조합이 얼마 정도 있어요, 부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108개 정도 있습니다.

○**강준현 위원** 108개?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예, 108개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은 100개 정도 있습니다.

○**강준현 위원** 이게 거의 수도권에 집중돼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경기가 한 42개로 제일 많습니다.

○**강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는데 이 경우에도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예, 기본적으로 같은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러면 그 규정에도 과태료 액수, 현재 여기는 10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도 금액이……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협동조합법하고 같은 내용으로 저희들이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정문 위원** 지금 같은 수준의 과태료가 돼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이정문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승기 과태료 부분은 아직 설명을 안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강민국 예, 나중에.

다음, 2항 설명하실 차례지요?

황승기 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황승기 3페이지 과태료 부과 신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정관·규약·규정,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와 보건·의료조합이 개정안에 따라 경영공시를 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각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적용례를 두어 경영공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서류 비치 등 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유효한 조치로 보이고 시행일과 적용례의 경우는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경영공시에 관련된 사항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위원님들 의견 있나요?

공시 의무가 되게 중요한 건데 과태료 100만 원은 너무 작은 것 아닌가?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협동조합법에 선례가 있어 가지고 그것과 같은 종류 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저희들이 맞춘 상태입니다.

○柳榮夏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강민국 예, 유영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柳榮夏 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 계셨는데, 저는 과태료 액수도 액수지만 그 내용에 따라 좀 차등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서류비치 의무를 위반한 것하고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하고 또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하고 이게 동일 레벨에서 같은 비난 가능성성이 있느냐 그러면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정위에서 과태료를 그냥 편하게 일률적으로 100만 원 이러는 것보다도 이 중에서 중한 것과 좀 차등을 둬서 중한 것은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과태료가 있어야지, 과태료 100만 원 무서워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의무를 지킨다고 안 보거든요. 차라리 과태료를 줘서 정말로 제재 기능을 둘 것 같으면 상대방이 이걸 위반했을 때 이게 나름대로 재정적으로 타격이 있어야지, 100만 원 해 놓으면요 100만 원 내고 그만두지요. 이것 지킬 사람이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차라리 실효성 있는 과태료를 하든지 아니면 과태료 조항을 없애세요. 이것 100만 원 해 놓으면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두 번째는 이 과태료 위반 행위도 차등을 둬서 중한 것은 과태료가 조금 높이 올라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용인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과태료 삭제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편의적으로 규정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의견을 드렸어요.

○소위원장 강민국 단순히 명부 비치를 하지 않은 것하고 경영공시를 하지 않은 것하

고 아예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안 한 것은 염연하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정부 측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예,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은 협동조합법의 그걸 벤치마킹해서 하는 거라서 사실 그것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정해진 상태입니다.

○**柳榮夏 위원** 부위원장님, 지금 자꾸 협동조합법을 말씀하시는게 협동조합법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경제 규모하고 지금 규모가 다르면요 과태료도 상향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벌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정말 어려웠을 때는 벌금 100만 원이 굉장히 큰돈이지만 지금 벌금 100만 원이라고 하면 코웃음 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과태료 100만 원 무서워서 이걸 안 하겠어요? 그러면 실효성 있는 것을 확보하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과태료를 물리지 마세요, 그냥. 과태료 내는 게 뭐예요?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예, 맞습니다.

○**柳榮夏 위원** 어느 협동조합이 돈 100만 원 무서워서 이걸 지키겠어요? 안 지켜요, 이것.

○**소위원장 강민국** 대표발의하신 이현승 의원님 의견 있으시면.....

○**李憲昇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 것 저도 동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이 제도가 도입이 안 됐으니까 도입을 하면 과태료 사례가 여러 가지 발생이 될 텐데 4호 5호 6호 이런 경우에 어느 게 많이 발생하는지 케이스를 분석해 가지고 추후에 한번 보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올려도 좋고 아니면 이대로 통과한 후에 다음에 과태료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차등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김용만 위원님.

○**김용만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기준을 설정할 때 기준에 있었던 기준을 벤치마킹해서 끌고 왔다는 거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런 상태에서 이것만 올라가는 것은 사실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도 법안의 그 외 부분에는 동의가 되기 때문에 통과를 하고 추후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좀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서 상향을 할 때 하더라도, 차등을 두면서 그 안을 제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李憲昇 위원**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그래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거의 다 모아진 것 같으니까 의사일정 제1항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황승기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승기** 의사일정 제2항 수급사업자의 서류보존의무 등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삭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보존의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수급사업자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도급거래 관련 서면 발급과 서류보존의 취지는 하도급계약에서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서류보존의무 위반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음을 감안할 때 개정안처럼 수급사업자를 서류보존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저희들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 있으신 분?

이정문 위원님.

○**이정문 위원** 여기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예, 없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러면 같은 사안인데 이 사례에서 원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부과를 하지 않은 사례입니까, 아니면 양쪽에 다 부과를 하지 않은 사례입니까? 어떤 사례입니까, 이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지금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 원사업자에게는 부과를 했지만 수급사업자에게는 부과를 하지 않은 사례는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런데 수급사업자에게만 부과한 사례 자체는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 이유 자체가 어쨌든 이 하도급법의 여러 가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하수급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에 대해 이런 것을 부과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서류보존의무는 일차적으로는 원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이고요.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 부차적으로 수급사업자한테 해당 의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과태료 부과를 안 해도 제도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민병덕 위원님.

○ **민병덕 위원** 다시 확인하면 같은 케이스에서, 같은 불법 하도급 사례에서 원사업자도 안 가지고 있고 수급자도 안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원사업자한테는 부과하고 수급자한테는 부과하지 않았다 이 말이지요?

○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실상 하도급법 위반할 때 원사업자가 피심인으로 되고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으로 된 적이 없어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원사업자가 서류보존의무를 위반했을 경우만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 **민병덕 위원**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4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기 전문위원께서 법률안 주요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승기** 의사일정 제3항에서 6항 부당특약 무효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부당특약 무효화의 주요 내용 및 개정 필요성입니다.

현행 제3조의4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 특약 설정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 과징금 및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부당한 특약의 효력을 법률에서 직접 배제하여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부당특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의, 과실 등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부당특약 효력을 법률에서 직접 배제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권리구제의 신속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부당특약 무효화의 범위입니다.

김상훈·이강일·민병덕 의원안은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는 경우 별다른 요건 없이 효력을 부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윤한홍 의원안은 부당한 특약 중에서도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현행 법률, 시행령, 고시 등에서 부당특약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무효화할 경우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그 피해를 원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의견과 현행법상 부당한 특약이라 하더라도 효력이 유지되어 수급사업자가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부당한 특약은 그 자체로서 현저한 불공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부당특약을 무효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는 계약의 내용이 일방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그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을 부인하는 입법례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부당특약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부당특약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무효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약의 내용 중에 무효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든 특약을 제약 없이 무효로 하면 일부 거래 안정성이 좀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다른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현저하게 불공정한 특약만 무효로 하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신장식 위원님.

○신장식 위원 이거는 신속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현저하게’ 같은, 이거 분명히 사법 심사를 한 번 더 하게 하는 이중의 절차가 되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현저하게인지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되게 돼서 신속한 구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현행 법률, 시행령, 고시 등에서 부당특약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다라고 하면 ‘현저하게’라는 말을 할 게 아니라 바로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오히려 그 부분에서 조절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거 법원으로 다 가야 된다고요. ‘현저하게’가 들어가면 뭐가 현저한 거냐를 가지고 다 법원 가야 돼요.

그리고 유사 입법례 건설산업법에 보면 계약의 내용이 일방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잖아요. ‘현저하게’를 수식하는 게 뒤의 ‘불공정한 경우’고, 그다음에 이 법은 부당특약이지 않습니까? 불공정한 경우와 부당특약을 동일하게 볼 수 없지요. 부당한 특약이면, 금 밟았으면 죽는 거지 금을 세게 밟아야 죽고 금 살짝 밟으면 안 죽는다? 저는 이거는 법률의 체계상으로도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와 부당특약 이거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어떻게 동일하게 볼 수 있지요? 불공정과 부당한 특약이 같습니까? 안 같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잠깐 설명드리면 일단 특약 중에서도 부당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예컨대 수급사업자의 권리가 제한된다든지 그다음에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전가한다든지 이런 쪽의 특약은 기본적으로 부당하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부당한 특약을 시행령하고 고시 이런 식으로 쭉 열거를 많이 해 놨습니다. 모든 경우를 다 그러면, 그런 경우까지 무효로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하도급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단계별로 거래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현저하게’ 하는 게, 저희들이 한정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장식 위원 부위원장님 제가 드린 질문의 핵심은, 앞에는 그냥 제 주장이고요 질문의 핵심은 부당특약이랑 불공정한 경우랑 이게 같아요? 지금 ‘현저하게’가 다른 입법례를 봤을 때 건설산업기본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유사 입법례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이렇게 돼 있다면서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예.

○신장식 위원 불공정한 경우라고 하는 부분과 부당특약이라고 하는 게 같은 개념이냐

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불공정한 결 부당특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다만……

○**신장식 위원** 모든 불공정이 부당한 특약이 됩니까? 저는 그거는 포괄 관계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그래서 부당한 특약 중에서도 그 내용에 있어서 너무 균형이 안 맞아서 현저하다 그러면 경우로 한정해서 그 특약을 무효로 하자는 게 저희 정부 측 입장입니다.

○**신장식 위원** 그러니까 불공정과 부당특약이 어떻게 다른지를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소위원장 강민국** 대표발의한 민병덕 의원님 질의 한번 해 보세요.

○**민병덕 위원** 기본적으로 부당한 특약을 해서는 안 된다, 금지 의무가 발생하고.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벌칙을 주면 뭐 하겠습니까? 이 사법적 효력이 그대로 있으면 결국 수급사업자를 구제하지 못하니까 사법상 무효로 해야지만 수급사업자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라는 취지에서 나온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러면 어떤 특약이 부당한 특약이냐에 대해서 지금 3조의4의 2항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1호를 보면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 부당한 거지요? 여기에 현저하게 부당함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2호도 보면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재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원사업자가 내야 될 결 수급자에게 주는 것도 부당하면 바로 무효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100원이든 1만 원이든 1억이든 그런 거잖아요? 1만 원은 괜찮고 1억은 현저하고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사안 자체가.

3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면 이것 부당하고,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은 부당한데 벌금은 물리면서 유효하게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3호는 명백하게 부당한 특약이면 무효인 게 맞습니다. 여기에 ‘현저하게’라는 것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똑같은 안건에 대해서 2019년·2020년 ‘현저하게’에 대해서 반대하고 ‘현저하게’가 없는 안을 동의하셨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그것 잠깐 설명드리면요, 저희 입장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에 있는 내용은 제가 봐도 현저하게 불공정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저희들이 ‘현저한’ 이것과 상관없이 동의를 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어느 정도는 행위 유형별보다는 어떤 특약의 내용에 따라서 내용을 구분해서 판단하는 게 좋겠다는 연구용역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판단한 겁니다.

○**민병덕 위원** 저도 연구 다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3조의4 2항의 1·2·3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효로 한다라고 해도 동의하시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래서 ‘현저하게’가 들어가야 될 부분과 관련해서는 2항 4호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예.

○**민병덕 위원**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현저하게’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나누자는 거예요. ‘현저하게’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들은 ‘현저하게’ 넣고, 그렇지 않고 명백한 것들은 ‘현저하게’를 넣어서 수급사업자의 권리구제를 늦추거나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 소송을 하게 되면 을들은 무조건 집니다. 시간 때문에 집니다. 법원에서 이겨도 시간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송이라는 그 자체를 하는 것을 엄두를 못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현저하게’가 들어가면 다 법으로 가자고 할 거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에 있는 내용은 사실 현저하게 불공정한 케이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시행령이나 고시에 예컨대 간접비 인정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현저하다고 판단해서 무효로 하면 여러 가지 거래 안정성을 해치는 부분이, 조항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상에 일단 현저한 것만 무효로 해도 저희들이 집행상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덕 위원** 아니, 아닐 것 같은데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아니,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민병덕 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보면, 우리가 3조의4에 3항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3항을 만들어서 2항의 경우 부당한 특약인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단서를 붙여서 ‘현저한’이 들어간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시라고요. 그 권한을 드릴게요. 지금 고시나 대통령령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거기에 끓어 내면 되잖아요.

제가 좀 더 따지면 ‘현저한’이 있는 건산법도 있고 ‘현저한’이 없는 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저한’이 있는 건산법을 보면 ‘현저한’이 당연히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계약체결 이후에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부담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경우’ 이런 것은 당연히 현저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삼아서 다른 입법례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이 법의 1·2·3호에 있는 부분은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무효로 하고 그 외에 ‘현저한’이 들어가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고시에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3항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하고 ‘다만’을 넣어서 ‘다만

부당한 특약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따로 고시로 정할 수 있거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그러면 저희들이 부당특약의 내용을 시행령하고 고시에 열거적으로 여러 가지 수십 개를 적어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특약의 내용을 저희들은 포섭해서 다 이렇게 크게 해 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면 법에 있는 세 가지 종류는 현저하게 불공정하니까 당연히 무효로 하고, 현저하게 불공정해서 무효로 하는 것은 다시 시행령으로 정하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민병덕 위원** 예.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그러다 보면 현저하지 않은 것은 하고 그다음에 현저한 것은 따로 시행령에 별도로 정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계상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법에 일부는 정해 놓고 나머지는 다시 시행령이나 고시로 위임해 놓고 그중에 내용상 현저하다 그런 경우에는 무효로 하는 게 체계적으로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민병덕 위원** 법에다가 '현저하게' 넣자는 거잖아요. 지금 제일 처음에 하신 주장 그대로 유지하는 거잖아요? 법에다가 '현저하게' 넣자는 거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그러면 시행령에는 현저하게 부당한 특약만 다시 열거를 해야 돼서 현저하지 않은 부분은 어디에 넣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자면.

○**소위원장 강민국** 김용만 위원님.

○**김용만 위원** 저는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여기에다가 넣는 게 아니고 시행령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제3조의4에 보시면 부당한 특약의 금지입니다, 부당한 특약의 제재나 제한이 아니고요. 금지라는 건 부당한 특약은 다 막겠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부당한 특약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그러면 금지가 아니고 이 부당한 특약에 대해 정도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갈 거면 이 조항의 이름부터 바꿔야 되는 건데, 금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준을 따져 가지고 금지가 아니게끔 한다라는 내용을 여기다가 넣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병덕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정의를 내리는 게 어려우니까 여기에서는 당연히 금지를 하기 위한 조치들이 부당하다고 하면 무효가 되는 게 맞고 그 외에 아주 특수한 예외적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케이스도 많지 않아야 되겠지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게 맞지요. 여기에서도 현저함을 가지고 따지고 시행령에서도 따진다는 그게 저는 충돌이 될 것 같아서, 이쪽에서는 당연히 금지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금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그 정도를 여기서도 봐주자, 현저한지에 대해서 불공정, 그러니까 현저하게 불공정하지 않다면 우리가 이것은 그냥 한마디로 받아 주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제가 추가로 부연 설명드리면, 하도급법은 기본적으로

행정법으로서 여러 가지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겁니다. 다만 이 케이스는 금지행위인데 그게 당사자 간의 계약인 경우, 보통 하도급계약이 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사법상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한정해서 저희들이 설명드리는 거고요.

○**김용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정의는 시행령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그래서 금지행위는 당연히 금지행위가 있는 거고, 다만 부당특약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현저한 부분만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자라는 게 저희 취지입니다. 그게 더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병덕 위원** 잠깐만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미안해요.

2019년하고 2020년하고 바뀐 것이,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들을 봤더니 이것 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들이 있더라, 그 구체적인 사안 중에서 현저한 것을 따져야 될 것과 현저한 것 따질 필요 없이 무효로 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 이 말씀이시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예.

○**민병덕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면 시행령에서 ‘현저’가 들어가야 되는 것들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예, 맞고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기 때문에……

○**민병덕 위원**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릴게요.

조문을 보세요. 3조의4의 2항을 보세요. 2항의 1·2·3호에다가 4호가 있잖아요. 4호에 나오는 대통령령 이것은 ‘현저한’ 필요 없이 되는 것들을 넣으면 되고,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예.

○**민병덕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3항을 만들잖아요. 그렇지요? 3항을 만들어 가지고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4호까지 다 포괄이 되는 거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예.

○**민병덕 위원** 그리고 ‘다만’ 해 가지고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 한정하여 ‘무효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한다’라고 하면, 3항 단서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은 ‘현저한 경우’로만 넣으면 되잖아요. 체계를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되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예.

○**柳榮夏 위원** 잠깐만.

○**소위원장 강민국** 끝나시고 하십시오.

민병덕 위원, 질문 끝나셨어요?

○**민병덕 위원** 잠깐만, 이해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분에서 현저한 것과 현저가 필요 없는 것 관련해서 어떻게 한 조문에 넣느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신장식 위원** 항을 달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소위원장 강민국** 유영하 위원님.

○**柳榮夏 위원** 부위원장님, 지금 제가 들으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게, 특약 금지가 됐을 때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수급자와 원청업자가 도급계약을 하든 하도급계약을 하든 간에 사적 자치에 의해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발생되는데, 특약으로 이런 이런 부당한 특약을 금지시켰을 경우에 그러면 금지된 데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 지금 이것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청구권자가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될 입증책임이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예, 맞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법에 무효를 담는 것은, 원법률 자체를 무효로 해 버리면 손해배상 청구 안 가고 그냥 부당이득반환 청구라서 소위 간단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나 부위원장님 얘기하신 거나 저는 그 기본에는 차이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하는 게 상대방의 권리구제를 좀 용이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이 법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법이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좀 수월하게 가는데 문제는 이 특약 전체를 다 무효를 시켜 가지고 전부 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중의 일부분에 한정시켜서 손해배상 청구에서 전환시켜서 권리구제를 쉽게 하는 게 맞는지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걸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게 되면 지금 공정위에서 얘기하는 저 의견 자체가 저는 그렇게 무리하다고는 생각이 안 돼요, 보는 관점의 차이라서. 저는 이게 옳고 그름의 차이는 아니고 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부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나 다 권리구제를 좀 쉽게 하자는 측면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걸 우선시하는 그 차이가 있는 거지,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의견을 드린 겁니다.

○**신장식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민 위원님, 그런 취지가 잘 살려지는지……

3항을 ‘제2항제1호에서 3호에 따른 부당한 특약을 포함하는 하도급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4항 신설, ‘제2항제4호에 따른 부당한 특약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대통령령에서 하시면 나머지 위임하고 말고, 어차피 4호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있기 때문에.

1호에서 3호 그리고 4호를 구분하는 겁니다. 1호에서 3호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명약관화하게 부당한 특약이고 현저성을 따로 따질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1호에서 3호는 현저성 요건 없이 부당한 특약으로 딱 매듭을 지어 놓고, 4호의 경우 대통령령을 정비하면 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같은 취지가 되는 것 아니냐.

○**민병덕 위원** 그런 거예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는 1호에서 3호는 현저성 따질 것 없이

바로 무효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나머지 본인들이 파악해 놓은 사례들을 봤을 때 어떤 것은 현저성이 들어가야 될 사안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동의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3항을 만들어서 어떤 것은 2항 4호로 넣어 가지고 현저성 필요 없는 것들을 그쪽으로 정리를 하시고, 3항 단서 조항에 있는 대통령령은 현저성이 필요한 것들로 정리하시라 이 말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소위원장 강민국 그 옆에 담당 국장이신가요?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정책과장 배문성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만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들 사실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에 있는 것은 현저하기 때문에 무효로 하는 안도 있었고 그런데 최종 결과적으로는 법령에 있는 내용이라도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금액이나 따져 보면 이게 과연 현저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유형에 따라서 현저한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고 어렵다라는 게 저희들 연구용역 결과 그다음 저희들이 토론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들은 결과라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한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 형식적으로 딱 분류하는 게 사실 거래의 어떤 복잡성과 다양성, 개별 구체성으로 들어갔을 때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이런 식으로 안을 냈습니다.

○민병덕 위원 아니, 그게 쉽지 않으면 수급사업자한테 유리하게 이걸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왜 만들면서도 수급사업자가 아닌 원사업자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그러세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거래의 안정성 측면에서 저희들이 각 가치를 같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장식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3조의4 2항의 1호·2호·3호는 현저성 요건 심사가 필요 없다라는 입장 아니셨나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저희는 지금 현저성이 필요한데 형식상 보면 그 정도로는 근거도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부담하지 않을 비용을 원사업자가 나한테 부담시키는 거기 때문에 현저하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성이 많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장식 위원 아까 분명히 ‘1호·2호·3호는 현저성 요건 필요 없이 무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아니,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시행령이나 고시에 있는 것보다는 명확성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그게 거래 당사자의 규모라든지 또 비용 증가의 내용에 따라서……

○신장식 위원 아니, 지금 입장 바뀌셨어요. 부위원장님, 아까 분명히 1호·2호·3호는 현저성 요건 심사의 필요성이 없이 명확하게 부당한 특약이고, 현저성 요건 심사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예, 맞습니다.

○**신장식 위원** 그러니까 1호·2호·3호하고 4호를 구분해서 현저성 요건이 필요 없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법 기술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는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저성 심사가 필요 없는 건 현저성 심사를 굳이 거기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아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차이가……

아까 저희가 크게 분류를 했을 때는 법령에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불공정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민병덕 위원** 그러면 현저성을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그것은 심결례나 판례 이런 걸 통해서……

○**민병덕 위원** 아니, 수급자가 입증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신장식 위원** 수급자가 입증해야지요.

○**민병덕 위원** 지금 여기에서 수급자가 입증하라는 거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그게 소송에 갔을 때는 그렇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 750조 불법행위 소송에서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 쉬운 741조의 부당이득 소송으로 간다 하더라도 현저함을 입증해야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전제가 보통……

○**민병덕 위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낸 것에는 이렇게 딱 쓰여져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집행 과정에서 해당 부당특약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지의 판단이 쉽지 아니하다는 점을 들어 부당특약으로 판단하는 경우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무효로 선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때는 이렇게까지 해 놓고 지금 왜 그렇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사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연구용역해서 검토를 더 심도 있게 한 상태입니다.

○**신장식 위원** 연구용역이 도대체 어느 분이 한 연구용역인지 모르겠는데……

○**소위원장 강민국** 잠깐, 잠깐.

어차피 지금 여기 조항을 삽입하고 또 삭제하고 여러 가지 지금 구두로 안 되는 거니까, 전문위원님, 내가 다음에 법안2소위 할 때 제일 먼저 상정하도록 할 테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민병덕 위원님하고 또 다른 대표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민병덕 위원** 아니에요. 그 연구용역이 있었으면…… 여기 한 명이라도 그 연구용역 본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안 줘 놓고는 지금 갑자기 연구용역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는 두 번이나 현저성 필요 없다라는 의견을 내놓고는 갑자기……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저희들이 연구용역 주요 내용은 설명을 드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덕 위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기의 권한을 쟁기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제가 대안까지 제시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안으로 하면 현저성이 없는 것과 현저성이 있는 것을 대통령령이나 고시로 나눌 수 있는 권한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현저하게’ 넣겠다고 하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그것을 저희들이 일의적으로 규정화시켜서 현저한지 아닌지를 유형화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내용상으로 그렇게……

○**소위원장 강민국** 부위원장님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결론이 안 날 것 같고 또 내용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민병덕 위원님 말씀도 나는 충분히 옳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민병덕 의원님 실하고 잘 의논해서 하면 제가 우선적으로 이것 다음에 심사할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덕 위원** 아니, 잠깐만요.

○**소위원장 강민국** 아니, 그것은 따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또 다른 게 있으니까.

○**강준현 위원** 그러면 계속 심사를 하자는 거지요?

○**소위원장 강민국** 계속 심사를 해야지요.

○**강준현 위원** 이것 오늘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柳榮夏 위원** 이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민병덕 위원** 유영하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법조인들이잖아요. 750조로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되는, 어떻게 수급사업자가 상대방 원사업자의 그 엄청난 갑의 고의·과실을 입증합니까?

○**柳榮夏 위원** 누가 그걸 몰라요?

○**민병덕 위원** 그것 때문에 741조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그냥 무효로 선언해 줘 가지고. 그런데 그 무효로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 현저성을 또 입증해야 된대, 수급사업자가. 왜 법을 만듭니까?

○**소위원장 강민국** 잠깐, 됐습니다.

우리가 조금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강준현 간사님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잠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논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덕 위원님.

○**민병덕 위원** 저희가 3항을 이렇게 바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제2항 1호부터 3호까지에 따른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른 부당한 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이렇게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강준현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저희들도 그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유영하 위원님, 의견?

○柳榮夏 위원 예, 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이것은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에 목적조항 개정이 있나 보네요. 그렇지요?

황승기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승기 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목적조항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질서를 바로잡고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보완함으로써 둘 사이의 동반 성장과 국민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과 개정안 모두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통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동반 성장과 건전한 국민 경제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경우 ‘힘의 불균형’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보완’ 등과 같이 수급사업자 보호에 보다 강조를 두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84년도 하도급법 제정 시부터 저희들이 지금 목적조항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법 제목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처럼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그다음에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서로 균형 있게 발전한다’는 원래 있는 내용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저희들은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민병덕 위원 84년부터 기존의 법 목적조항이 있었던 거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런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하도급업자들을 보호하는 데 그간 많이 부족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도급업자들의 원성이 있었고 그것을 조금 전에 다른 조항 하는 것처럼 계속 강화시켜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원래 목적이 하도급 수급사업자를 보호해서 균형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목적조항을 했으면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84년이면 지금 30년입니까, 40년입니까? 40년 전의 목적조항을 그대로 우리가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좀 더 강조한 표현으로 바꾸자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편안하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일단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들도 같고요. 다만 표현상 현행처럼 어느 정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그다음에 ‘대등한 지위에서 서로 상호 보완 한다’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 지금 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하고 일치성이, 좀 더 밀접도가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에는 하도급 수급사업자의 힘이 약해서 저희들이 보완해 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대등 당사자 사이에서의 지위도 같이 발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컨대 표준계약서 사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정거래협약 부분, 연성규범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처럼 했을 때가 오히려 수급사업자한테 더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만약에 개정안처럼 한다 그러면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보완한다 그랬는데 지위의 보완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부분에서 실링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측면이 있는데 현행 규정에는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오히려 더 법의 제목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낫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전문위원님, 다른 건 없나요?

○**전문위원 황승기** 이것은 사실 동일한 내용을 두고 표현을 조금 강조하는 부분이라서 조정이, 의견을 수렴하시는 게 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신장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장식 위원** 84년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최초로 제정됐잖아요. 신규 제정의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억제하고 수급사업자의 열위적 지위를 보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민병덕 위원** 84년 것도?

○**신장식 위원** 84년도 것의 제정 목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목적조항에 그러한 부분이, 오히려 지금까지 제정 목적이 그대로 반영돼서 목적조항에 있지 않았다는 게 저는 오히려 좀 이상한데요.

보니까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억제하고 수급사업자의 열위적 지위를 보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질서 바로잡고 수급사업자의 열위적 지위를 보완한다고 하는 게 원래 법 제정의 목적인데 실은 법 제정의 목적이 오히려 지금까지 목적조항에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은 게 저는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 의원님 발의한 대로 가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84년에 제정된 법의 제정 목적을 이제야 좀 분명히 법 조항에 담는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유영하 위원님.

○**柳榮夏 위원** 지금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열악한 지위를 고치기 위해서 ‘대등한 지위’라고 들어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민병덕 의원님 안 중에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구가 과연 목적조항에 들어가는 게 합당한 건지는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현행 조항으로 목적을 두더라도 지금 하도급상의 어떤 법체계나 조항들 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가 다 개선해 가거든요. 원래 목적조항이라는 게 그렇게 정밀하고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여러 합의를 담을 수 있는 그 표현을 목적조항에 담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 나눠서 ‘이거 할게요’ ‘이거 할게요’ 그게 과연 법적 체계상 맞는 건지는 저는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담더라도 단정적인 표현은 저는 좀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힘의 불균형’이라는 게, 물론 현행법상 또는 우리 사회 경제에서 원청업자와 수급업자 중에서 수급업자나 하도급업자가 열악한 지위라고 흔히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반대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걸 단정적으로 보편화시켜서 조항에 담는 것은 저희가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러면 유영하 위원님 말씀처럼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그 부분만

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질서를 바로잡고,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보완함으로써’.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보완하는 게 가장 핵심인데 현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실은 대등한 지위 아니잖아요. 대등한 지위 아닌데, 현행에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보완하는’ 이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냅니다. 이것도 어렵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대등한 지위라는 게 이루어질 어떤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구를 보시면. 그런 대등한 지위에서 충분히 역학관계를 할 수 있게끔 이 법이 존재한다고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오히려 해석해서 현행처럼 두는 게, 저희들이 이것 말고 대규모유통업법도 있고 목적조항에 보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돼 있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함의를, 다양하게 함축할 수 있는 표현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다음에 이현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憲昇 위원** 제가 보니까 목적이 1·2·3항이 있는데 2항 같은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보완한다’는 것보다는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한다’ 이게 더 상위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이거를 민병덕 안대로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정도로 바꾸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1. 불공정 거래질서 바로잡고’, 불공정 거래질서를 바로잡는 것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현행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소위원장 강민국** 아까 내용도 부당특약에 대해서 수급사업자에 대한 민병덕 의원님 안이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 목적조항 가지고 계속 이러면 너무 끌이 없을 것 같아요.

○**민병덕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어차피 실질적인 수급사업자의 보호 내용은 아까 다 담겼거든, 민병덕 의원님 안으로 우리가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민병덕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가시지요?

○**민병덕 위원**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웬만하면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과 아까 용역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근거를 이 자리에서 제시하려면 저희에게 용역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저희가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는 이걸 비공개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게 대등하지 않은 겁니다. 본인들은 용역 자료를 가지고 있고 우리한테는 안 준다고 그러면서 용역 자료를 근거로 삼으면 이게 대등하지 않은 겁니다. 불공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그것은 민병덕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또 민병덕 위원님이 을지로위원회 위원장하면서 약자들하고 많이 하는데 그건 아주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법안1소위가 있어서, 또 4시 반에 전체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원회는 앞서 의사일정 제2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 의결한 바 있으나 방금 심사한 동일 제명의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법률과 함께 대안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5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강명구 강민국 강준현 김용만 민병덕 신장식 유영하 이정문 이현승 전현희

○출장 위원(1인)

김남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전문위원 황승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조홍선

기획조정관 선중규

기업협력정책관 홍형주